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9.25.(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9월 8일

○ 회부일자 : 2003년 9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9. 23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 환 규)

가. 제안이유

-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장애 1급 내지 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질병구분에 따라 고도·중등도·경도장애 해당자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보훈처의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중증 판정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효과와 도세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문제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국가유공자”를 각각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유공자 등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1. ~4 (생략)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④ (생략)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1. ~4 (생략)	1.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광주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생략)

2.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생략)

▣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애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애등급"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을 말한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①~⑥ (생략)

⑦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하생략)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8>

②삭제 <2000.2.23>

③삭제 <2001.1.8>

④~⑤ (생략)